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64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648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54425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15.

판결선고 2022. 5. 1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544254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9969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위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선택적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64,727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D(父)와 C(母)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D의 소유였는데,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1. 12. 20. 사망하자, 2012. 5.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자(子) E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2014. 5. 14. 위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2/11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각각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C은 2019.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 위 9/11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9/1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5.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70,295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망인 명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909,624원을 송금하였다.

마. 망인의 G에 대한 ① ‘가계자금기타한도대출(원금불균등) 가계 분할 대출(계좌번호 3 생략)’ 채무 11,200,000원과 ② ‘가계자금기타한도대출(일시) 주택담보 일시 대출(계좌번호 4 생략)’ 채무 8,800,000원은 2011. 11. 15. 모두 상환되었다.

바. L은행이 2011. 11. 14. 발급한 ‘마이너스대출 기본 약정 정보’에 의하면 K의 L은행에 대한 ‘마이너스대출 가계일반자금대출(계좌번호 5 생략)’ 채무는 위 일자 기준 6,941,799원이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0. 2. 22. 근저당권자 M단체,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0,800,000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이, 2009. 7. 1. 근저당권자 G,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1순위 근저당권은 2011. 11. 15.에, 제2순위 근저당권은 2011. 11. 17.에 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말소되었다.

아. 원고는 2011. 11. 11.경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바로 앞에 위치한 광주 동구 I 대 129㎡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2011. 11. 2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그 후 원고는 2011. 12. 13.경 J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아래 표 기재 10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011. 12. 14.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6. 12. 2. 말소되었다.

순번	공동담보 목록	말소 여부
1	광주 동구 N 토지(이 사건 부동산)	-
2	광주 동구 N 건물(이 사건 부동산)	-
3	광주 동구 I 토지	-
4	광주 동구 I 건물	-
5	전남 화순군 O	2016. 12. 2.

6	전남 화순군 P	근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말소
7	전남 화순군 Q	
8	전남 화순군 R	
9	전남 화순군 S	
10	전남 화순군 T	

차. 원고는 C에게, 2011. 9. 5. 3,300,000원을, 2012. 2. 17. 1,050,000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는데, 위 3,300,000원의 '거래기록사항'란에는 '어머니방전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1,050,000원의 경우 '거래기록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6, 7,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망인 및 C에 대한 채권

가) 망인에 대한 채권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의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망인에게 2011. 11. 15. 21,879,619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에게 위 21,879,619원을 대여한 것이다.

설령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위 21,879,619원 중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14,909,624원은 ①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망인의 G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거나, ②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거나, ③ 사무관리자로서 망인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위 ① 내지 ③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원고는 망인에게 위 14,909,624원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한 보수공사비 27,656,000원을 망인을 대신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2011. 9. 5. 보증금 반환 용도로 3,300,000원을, 2012. 2. 17. 1,050,000원을 각각 대여하여 합계 4,35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구체적인 청구원인

가) 상속채무 상환청구

망인은 2011. 12. 20.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8,664,727원[= 47,656,000원(= 대출 관련 차용 채무 20,000,000원 + 보수공사비 구상 채무 27,656,000원) × 피고의 상속 지분 2/1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1. 1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C에 대하여 위 1)의 가)항에서 언급한 상속채권 12,997,090원(= 47,656,000원 × C의 상속 지분 3/11, 원 미만 버림) 및 위 1)의 나)항에서 언급한 4,35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그런데 C은 2019. 9. 2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피고는 임의로 C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주장의 보수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앞집을 매수하여 이사 온 원고가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호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 보수공사비에 관한 대위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 등 다른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당사자 관계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3. 판단

가. 상속채무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원고가 2011. 11. 15. K 명의 L은행 계좌로 6,970,295원을, 망인 명의 G 계좌로 14,909,624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같은 날 망인의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원(= 11,200,000원 + 8,800,000원)이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동구청이 망인에게 2011. 9. 8. 9,137,500원을, 2011. 10. 5. 4,949,2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1.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47,656,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속채무 상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1. 11. 15. 망인에게 21,879,619원을 대여하여 그 돈으로 망인의 G 대출금 채무 합계 20,000,000원이 상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인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14,909,624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 14,909,624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1. 11. 15.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한 6,970,295원은 2011. 11. 14. 기준 K의 L은행 대출금 채무 6,941,799원에 근사한 금액으로 2011. 11. 15. 위 K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L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보면 K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K이 L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K에게 송금한 6,970,295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망인이 이자 납부가 부담스러워 대출금을 갚기 위해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해서는 망인이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6,970,295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③ 원고가 2011. 11. 15. 망인에게 송금한 14,909,624원은 같은 날 U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9,976,987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인 2011. 11. 11.경 원고는 광주 동구 I 대 129㎡ 및 그 지상 주택을 H로부터 매수한 후 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 순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2. 13.경 J조합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의 담보 목적물로 제공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원고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011. 11. 15. 망인과 K에게 21,879,619원을 송금해주고, 2011. 12.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④ 2011. 11. 15.경 망인은 80세의 고령이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1. 12. 20. 사망한 점과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그 피담보채무를 긴급히 변제해야 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G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해주는 일련의 행위가 망인이 법률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의욕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원고는 망인이 이자 납입을 부담스러워하였고, 보수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자를 변제하기 부담스러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였거나 그러한 보수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⑤ 원고는, 망인의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로서 2011. 11. 15. G에 14,909,62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한 위임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에 대하여 2차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송금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대위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위 1. 인정사실 마.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1. 15. 위 14,909,624원을 망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같은 날 상환된 망인의 대출금 계좌인 ‘(계좌번호 3 생략)’ 및 ‘(계좌번호 4 생략)’과 달라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대출금 변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단순히 망인의 대출금 상환자금 일부가 원고가 송금한 14,909,624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노후하였고, V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철거되는 바람에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보수공사의 범위나 내용, 보수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갑 제5, 7, 11, 12호증의 각 기재1)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로 27,656,000원 상당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보수공사비 대위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12,997,090원 상당의 상속 채권 및 합계 4,35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47,656,000원(= 대출 관련 차용 채무 20,000,000원 + 보수공사비 구상 채무 27,656,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상속 채권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C에게, 2011. 9. 5. 3,300,000원을, 2012. 2. 17. 1,050,000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고, 위 3,300,000원의 '거래기록사항'란에는 '어머니방전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C의 관계, 송금 당시 C의 나이, 송금된 각 금원이 부양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C에게 이 부분 금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이전해준 사실을 알고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송금사실 및 거래기록사항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C에게 위 금원 합계 4,35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상속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선택적 청구(채권자대위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는바, 선택적 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유현주, 판사 신호승

별지

1) C과 K, W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이미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이 작성된 상태에서 C이 단지 인적사항과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나이,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